

안건 참고자료

■ 제1호 의안: 제24기(2023. 01. 01. ~ 2023. 12. 31.)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

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s://dart.fss.or.kr>)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(<http://www.gigalane.com>)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제2호 의안: 이사 선임의 건

- 후보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요 경력 등

성명	생년월일	주요 약력	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김현제 (사내이사)	1980.09.29	- Univ.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 MBA - (前) Bain&Company - (前) ㈜효성 전략본부 - (現) ㈜기가레인 대표이사 / 사장	없음	임원	이사회
노경일 (사내이사)	1973.02.26	- (前) ㈜LG이노텍 기획팀장 - (前) ㈜DMS CFO / 상무이사 - (前) ㈜기가레인 CFO / 전무이사 - (現) ㈜기가레인 베트남법인장 ㈜기가레인 RF사업부문장 / 부사장	없음	없음	이사회

-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,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,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성명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김현제	없음	없음	없음
노경일	없음	없음	없음

■ 제3호 의안: 감사 선임의 건

- 후보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요 경력 등

성명	생년월일	주요 약력	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신용각	1962.10.07	-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- (前) KB증권 IB 본부장 - (前) KB증권 상무이사 - (現) ㈜기가레인 상근감사	없음	없음	이사회

-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,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,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성명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신용각	없음	없음	없음

■ 제4호 의안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- 2024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요청액: 30억 원

구분	당기	전기	비고
이사 보수한도	30억 원	30억 원	전년과 동일

*개별 이사의 연간급여(퇴직금등 제외)는 '임원보수 규정'에 따라 회사의 직급별 표준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되 그 상한은 연봉직 사원 초임 연봉 평균의 10배수로 하여 결정함

■ 제5호 의안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- 2024년 감사 보수한도 승인 요청액: 5천만 원

구분	당기	전기	비고
감사 보수한도	5천만 원	5천만 원	전년과 동일

■ 제6호 의안: 임원 퇴직금규정 개정의 건

- 개정목적: 당사의 임원 퇴직금규정을 현 상황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함
- 개정세부내역: 첨부한 임원 퇴직금규정 전·후 비교표 참조

● **임원 퇴직금규정 전·후 비교표**

변경 전 내용	변경 후 내용	변경의 목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4조 (퇴직금 산정기준) 4.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[평균임금(기본급+상여금) X 재임연수 X 지급률]로 한다.</p> <p>4.2 지급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률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표이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임연수 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회장, 부회장은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사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임연수 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무이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임연수 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무이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임연수 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근이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임연수 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위	지급기준	지급률	비고	대표이사	재임연수 1년	3	* 회장, 부회장은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	부사장	재임연수 1년	2	전무이사	재임연수 1년	2	상무이사	재임연수 1년	2	상근이사	재임연수 1년	1.5	<p>제 4조 (퇴직금의 계산) 4.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[평균임금 X 재임연수 X 지급률]로 한다. 평균임금 산정은 퇴임 월 포함 이전 3개월의 기본급+역량급(일시지급분 제외)의 총합계액을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.</p> <p>4.2 지급률 기준은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기준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급률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표이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임연수 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이사대우: 마스터/기술전문위원 등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장~ 상무이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임연수 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근이사 및 이사대우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재임연수 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5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위	지급기준	지급률	비고	대표이사	재임연수 1년	3	* 이사대우: 마스터/기술전문위원 등	사장~ 상무이사	재임연수 1년	2	상근이사 및 이사대우*	재임연수 1년	1.5	<p>평균임금 산정방법 명시</p> <p>당사 직위 기준으로 변경 (사장,이사대우 직위 포함)</p>
직위	지급기준	지급률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표이사	재임연수 1년	3	* 회장, 부회장은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사장	재임연수 1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무이사	재임연수 1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무이사	재임연수 1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근이사	재임연수 1년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위	지급기준	지급률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표이사	재임연수 1년	3	* 이사대우: 마스터/기술전문위원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장~ 상무이사	재임연수 1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상근이사 및 이사대우*	재임연수 1년	1.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5조 (재임연수 계산) 5.1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. 5.2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. 5.3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월할 계산한다. <신설></p>	<p>제 5조 (재임연수 계산) 좌동 5.4 휴직기간은 재임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재임연수에 포함한다.</p>	<p>휴직기간 미포함 조항 신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7조 (특별위로금)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년도 연간급여액의 200%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 7조 (특별위로금)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또는 사고/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년도 연간급여액의 200%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일부 내용 추가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 8조 (퇴직 월의 급여) 퇴직 당월의 급여는 급여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.</p>	<p><삭제></p>	<p>본항 삭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<신설></p>	<p>제 9조 (등기임원 퇴직금 지급 제한) 등기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받아 해임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</p>	<p>등기임원 퇴직금 지급 제한 조항 신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